

[ ] 총회

[ ] 대의원회

소집권자 지명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|    |  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노동조합의 명칭    |    |  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   |  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소집권자        | 성명 |  | 노동조합<br>직책 |  | 생년월일<br>(남/여) |  |
|             | 주소 |  |            |  | 전화번호          |  |
| 회의에 부칠 사항   |    |  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
위와 같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

[ ] 총회

[ ] 대의원회

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.

년

월

일

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

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

직인